

노 사 합 의 서

주식회사 케이티와 KT노동조합은 임직원의 애경사 발생시
임직원 상호간 상호부조를 통한 Great Work Place 구현을
위하여 불임과 같이 상호부조제도를 시행하기로 합의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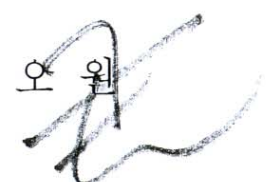
불임 : 상호부조제도 시행에 관한 사항 1부

2011년 12월 19일

주식회사 케이티
회장을 대리하여

KT노동조합
위원장을 대리하여

경영지원실장 권 사 일 

사무처장 윤 오 원 

[붙임]

상호부조제도 시행에 관한 사항

1. 가입대상

- 모든 임직원(전권, 청원경찰, 고객센터직, 재적전출자 포함)

2. 재원조성

- 임직원 : 월 20,000원씩 매월 거출(급여공제)
- 회 사 : 임직원 거출금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해 예산 지원

3. 지급사유

- 본인/배우자의 사망, 본인/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 사망
- 본인 및 자녀의 결혼

4. 지급금액

- 지급사유 발생시 건당 500만원(재직기간중 총 2회에 한하여 지급)
- 단, 재직기간 중 한번도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퇴직시 본인 거출금의 1.1배 환급(최대 264만원 한도)

5. 기타(재원관리 등)

- 상호부조 재원조성, 운영 및 결산보고 등을 위하여 노사가 각각 3인으로 구성하는 상호부조 운영위원회 구성·운영
- 급격한 재원변동 발생시 노사합의로 임직원 거출금 및 환급금 등 조정
- 상호부조금 지급담보 및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회사가 보험상품 가입
- 기타 지급시기, 기준, 절차 등 세부사항은 노사가 별도 협의하여 운영

6. 시행시기 : 2012.1.1자

- 임직원 거출금 급여공제는 2011.12월 급여일부터 시행